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



광주광역시의회

목 차

1. 운 영 기 간	2
2. 심 사 대 상 기 관	2
3. 특 별 위 원 회 구 성	2
4. 심 사 일 정 및 장 소	3
5. 관 계 공 무 원 출 석 현 황	3
6. 심 사 결 과	3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

1. 운영기간

- 기 간 : 2018년 5월 23일 (1일간)

2. 심사 대상기관

- 안전도시경제국 도시정책과

3. 특별위원회 구성

- 위 원 장 : 제갈 임주 의원
- 간 사 : 윤 미 현 의원
- 위 원 : 문봉선 의원, 안 영 의원, 고금란 의원
- 사무보조직원

전	문	위	원	심	명	순
전	문	위	원	김	기	태
지	방	행	정	7	문	수
속	기	사	이	해	영	

4. 심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대 상 부 서	장 소	비 고
2018. 5. 23. (수) (10 : 30)	< 운 영 계 획 서 채 택 > 도 시 정 책 과 < 결 과 보 고 서 채 택 >	의회 3층 특 위 장	제1차 특위

5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일 시	출 석 공 무 원	장 소	비 고
2018. 5. 23. (수) (10 : 30)	< 운 영 계 획 서 채 택 > 행 정 복 지 국 장 도 시 정 책 과 장 < 결 과 보 고 서 채 택 >	의회 3층 특 위 장	제1차 특위

6. 심사결과

연번	의안번호	부 의 안 건	의결일	결과
1	2018- 25	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8. 5.23.	수정 가결

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018 - 2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5. 23.

발의자 : 조례심사특위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오피스텔 용도비율은 상위법에서 도시·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아 제58조제3항 중 의무비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
- 제61조제6호 및 제7호는 동조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제58조제3항 앞단 중 “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(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)이 전체 연면적의 30퍼센트(의무비율)이상으로 하며”를 삭제하고, 후단 “용적률(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)은”을 “용적률(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)을”로 한다.

제61조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제61조제3호 중 “자문”을 “심의 및 자문”으로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자문”을 “심의 및 자문”으로 한다.

3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주민의견의 반영 등) ① ~ ③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대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(이하 "시민계획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	(좌 동)
제8조(주민의견 청취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	(좌 동)

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,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8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

① -----

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(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)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(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)이 전체 연면적의 30퍼센트(의무 비율) 이상으로 하며,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(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)은 400 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제61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

1 ~ 2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

①(좌 동)

② (좌 동)

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(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)은 ----

----- (삭 제)-----

---,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(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)을 400 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제61조(기능)

1 ~ 2 (현행과 같음)

3.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<u>자문</u> 4.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<u>자문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<u>심의 또는 자문</u> 7.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<u>심의 및 자문</u> 제71조 (설치 및 기능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 ~ 3 (현행과 같음) 4.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.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.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.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	3.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<u>심의 및 자문</u> 4.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<u>심의 및 자문</u> 5. (좌 동) 6 ~ 7 (삭 제) (좌 동)
---	--